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6월 5일, 이은미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4년 6월 10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6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은미 의원)

가. 제안이유

-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농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년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중장년농업인 지원사업(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욱)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1부.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6. 10.)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이은미 의원
- 제안일자 : 2024. 6. 5.
- 회부일자 : 2024. 6. 10.
- 상정일자 : 2024. 6. 10.

2. 제안이유

-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농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년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중장년농업인 지원사업(안 제5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지자체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복지증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농림 산업 진흥을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법규범에 의한 계층별 지원 농업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중장년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책무)에서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복지 증진을 군수의 책무로 삼았으며,
- 안 제5조(지원)에서 우리 군의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장년농업인 지원사업 >

1. 영농자재 지원사업
2. 중장년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4. 중장년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5.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종합검토의견

○ 계층별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지원 규범을 마련하여 관내 농업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평창군 읍·면별 중장년 농업인 수

(단위: 명)

구분	합계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50대	2,198	363	118	195	293	321	219	502	187
60대	2,321	425	143	249	329	277	226	477	195

※ 2022년 기준(농림사업정보시스템 등록현황)

[붙임 2]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이 은 미 의원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88
----------	-----

발의연월일: 2024년 6월 5일

발 의 자: 이은미 의원

찬 성 자: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의원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농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장년농업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년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평창군 농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안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중장년농업인 지원계획(안 제4조)

다. 지원(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다. 입법예고: 2024. 5. 7. ~ 2024. 5. 27.(20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2024. 4. 24. ~ 2024. 5. 2.(9일간), 아래표 참조.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 제출

조례안(의회안)	검토안(농정과)	의회 의견
<p>평창군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안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농업인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역량강화 및 안정적 농업 경영을 지원하여 평창군 농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을 두고 있음 ·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근거 및 평창군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항 등 평창군의 농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농업·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시 중장년농업인의 다수가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지원받고 있음 · 따라서, 기존 시행 중인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를 통한 중장년농업인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기존 조례와의 유사·중복 조례로 판단됨 	<p><u>미수용.</u></p> <p>1. 유사·중복조례 여부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는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포괄적 지원근거를 담고 있는 조례로, 중장년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아님. 따라서 <u>특정(중장년농업인) 대상</u>을 지원조건으로 하는 본 조례안과는 <u>적용대상과 범위가 다르므로 유사·중복 조례로 보기 어렵음.</u></p> <p>2. 체계적 지원계획 마련 안 제4조(중장년농업인 지원 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계획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시책과 사업의 임의 결정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p> <p>3. 새로운 시책과 사업 개발 · 안5조(지원)관련, 본 조례는 중장년농업인 지원 관련 <u>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u> 하기 위함임. · 또한 해당 안에는 포괄적 사업 내용을 명시한것이며, 제5조제5호를 통해 <u>새로운 시책과 사업 제정 및 개발이 가능함.</u></p>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중장년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장년농업인 지원계획)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장년농업인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정책 방향
2.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
3.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4.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자재 지원사업

2. 중장년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4. 중장년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5조의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4. 1. 25.]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제5조(지원)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자재 지원사업
2. 중장년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4. 중장년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 농업인을 지원함과 관련하여 제5조 지원사업은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이시균
연락처	(033) 330 - 1302